

#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|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837 |
|------------|-----|

2019. 9. 3.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1. 제안경위

- 2019. 8. 7. 이성배 의원 대표 발의 (2019. 8. 13. 회부)

## 2. 제안이유

- 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

## 3. 주요내용

-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, 사장의 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, 이성배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9조(사장) ① (생략)               | 제9조(사장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 | ② -----<br>-- <u>총괄하며,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/u> |
|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‘사장’의 임무와 관련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, 개정조례안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 「지방공기업법」 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짐.
- 또한 「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(’19.3.22 개정)」 제13조에도 개정조례안과 같이 ‘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’라고 규정되어 있어,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- 참고로, 서울시 투자기관 5개소 중 기관의 설치 근거 조례에 사장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이 이미 반영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<sup>1)</sup>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사<sup>2)</sup>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동시 발의되어 금번회기에 처리될 예정입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 당 자 | 도시계획관리위원회<br>입법조사관 윤 은 정 |
| 연 락 처 | 02-2180-8208             |
| 이 메 일 | urbanth@seoul.go.kr      |

---

1) 「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(2010.4.22. 개정)

2) 서울주택도시공사(의안번호 837), 서울에너지공사(의안번호 836), 서울시설공단(의안번호 835), 서울교통공사(의안번호 834).

## 【붙임】 관계규정

### ○ 지방공기업법

**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**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4.>

1.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
3.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15.>

1.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

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

⑦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

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 [전문개정 2011. 8. 4.]

**제58조의2(사장과 경영성과계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1. 8. 4.]

### ○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8조(사장)**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,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### ○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(2019.3.22. 개정)

**제13조 (임원의 직무)**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
③ 이사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이 유고시에 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으로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7.12.1.>

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